

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

조사일		대상문화재	
조사자	성 명		전공 분야
	소 속		직위(직책)
주요 지정 사항 검토	문화재 종류		
	문화재 명칭		
	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		
	연혁·유래 및 특징		
	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		
	지정 대상 및 범위	<해당 문화재(문화재구역)> <보호물> <보호구역>	
보호 관리 사항 검토	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(안)		
	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		
종합의견			

위와 같이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

1. 문화재 종류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,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(시·도지정문화재 등)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.
2. 문화재 명칭: 국가지정문화재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, 시·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.
3.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: 문화재의 인문적·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.
4. 연혁·유래 및 특징: 문화재의 주요 연혁·유래·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.
5.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
 - 지정 가치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,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의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·경관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,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..
 - 근거기준은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.
6. 지정 대상 및 범위: 해당 문화재(문화재구역)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,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,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.
7.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(안)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.
8.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: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.

※ 공통사항

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(個條式)으로 적고,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“세부 내용 별첨 참조”라 적습니다.